

의안번호	2215172
의 퇴 인	권향엽의원
회 답 일	2026.1.14.
추계번호	25D6770
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2 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관한 특례) 신설	여수·순천 10·19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「민법」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 ¹⁾ 과 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제2항 ²⁾ 을 적용하지 아니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대상·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2 (손해배상청구권의 소 멸시효에 관한 특례) 신 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III. 미첨부 사유

□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(안 제15조의2 신설)

- 현행법은 여수·순천 10·19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 손
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

1) 「민법」

제166조(소멸시효의 기산점)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.

제766조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)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
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.

③ 미성년자가 성폭력, 성추행, 성희롱, 그 밖의 성적(性的)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
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.

2) 「국가재정법」

제96조(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시효)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
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.

있지 않아, 손해배상청구권은 「민법」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

- 개정안은 여수·순천 10·19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「민법」 및 「국가재정법」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손해배상소송의 증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재로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제기될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건수,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가정에 따른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